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.

발의자 : 추경호 · 김기현 · 권성동

서지영 · 김성원 · 이현승

김정재 · 최은석 · 박수민

박성민 · 김상훈 · 이인선

박대출 · 권영세 · 윤영석

배준영 · 김승수 · 김위상

정점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및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특례,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청년층의 주거 · 결혼 · 노후 대비 등 생애주기별 자산축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,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

것임(안 제87조제2항·제3항,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2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9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